

## 뉴욕시 사업장 개방 1단계에 대한 자료

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시를 만들기 위한 네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

1.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무르기
2. 물리적 거리 유지하기
3. 얼굴 가리개(마스크류) 착용하기
4. 손을 청결하게 하기

### 사업장 개방을 할 예정이라면:

6월 8일 월요일에 뉴욕시는 개방 1단계를 시작합니다. 제조업체,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가 옥외 또는 매장 내에서 손님이 물품을 받아가거나 손님에게 전달만 가능합니다. 건설 부문과 농업, 사냥, 임업 및 어업 부문의 사업장도 역시 개방될 것입니다.

가장 먼저 [뉴욕주의 New York Forward](#) 지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– 사업장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주 정부의 명령을 반드시 읽고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

뉴욕주 지침에 따른 개방 1단계를 위해 뉴욕시 건강 및 정신 보건부(NYC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, DOHMH)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[각 부문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](#)을 마련하였습니다. 뿐만 아니라, 중소기업부(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, SBS)에서 사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[간단한 안내문](#)을 작성하였습니다.

### 사업체를 위한 지원

**지침 준수를 위한 지원:** 888-SBS-4NYC로 연락해 주십시오.

**필수적인 안전 계획서 작성 도움:** 뉴욕주 보건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)에서 작성한 [이 견본](#)에서는 사업체들이 자체의 안전 계획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이 안전 계획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합니다.

**샘플 선별검사 도구:** DOHMH의 [COVID-19 증상 선별검사 도구](#)를 사용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매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건강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.

**청결을 위한 행동 지침:** DOHMH는 사업체들에게 적절한 청소 규칙을 안내하기 위해 [비의료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/소독 지침](#)을 마련하였습니다.

**안내문:** DOHMH에서 여러 언어로 작성된 [인쇄용 포스터](#)를 제공합니다. 사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. 이 포스터에 포함되는 내용:

- [확산 방지](#)
- [사회적 거리](#)
- [입을 가리고 기침하기](#)

- [손 씻기](#)

**무료 마스크류:** 사업체들은 시 전역 [60여 곳](#)에서 직원 한 명당 5개의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총 2백만 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**재정 지원:** 약탈 피해를 받아 점포가 손상된 소상공인들은 [수리 자금으로 최대 \\$10,000](#)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브롱크스(Bronx)에서 시작되어 다른 자치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## 점검

사업체 개방 요건 점검은 특별단속국(Office of Special Enforcement, OSE)에서 조직하며 다양한 기관의 인력들로 구성됩니다. 시 전역에서 안전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 점검이 실시될 것이며 311번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응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. 검사원은 사업체들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과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나 지속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강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보안관국(Sheriff's Office), 소방국(Fire Department, FDNY), 환경 보호부(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, DEP),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부(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, DCWP), 교통부(Department of Transportation, DOT), DOHMH 및 OSE에서 나온 검사원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. FDNY에서는 정기 화재예방 점검과 함께 사업체 개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모든 검사원들은 동일한 교육을 받고 그에 대응하여 조직될 것입니다.

## 노동자인 경우

노동자들은 311로 전화하면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부(DCWP) 상담전화로 연결되어 고용주에 대한 불만이나 직장 관련 질문(가령 유급 병가에 관한)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
노동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[이 도움 자료](#)와 [DCWP 웹사이트](#)에 있는 기타 자료를 참조하십시오.

## 자세한 정보는 311로 문의하십시오

누구나 311로 전화하여 사업장의 지침 미준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OSE 또는 협력 기관에서 나온 사업체 검사원이 민원을 접수합니다(상기 '점검' 참조).

누구나 311로 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민원 사항은 NYPD에 전달됩니다.

## 추가 자료

이 웹사이트를 즐겨찾기로 해두십시오. COVID-19와 요건에 관한 정보는 자주 변경되고 있습니다.

- [NYC COVID-19 포털](#) - [nyc.gov/coronavirus](https://nyc.gov/coronavirus) - [사업체 & 비영리 단체\(Business & Non-profits\)](#)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.
- [NYC DOHMH 웹사이트](#) - [nyc.gov/doh](https://nyc.gov/doh) - [COVID](#) 및 [사업체 대상 지침\(Guidance for businesses\)](#) 또는 기타 자료에서 [포스터 & 전단지\(Posters & Flyers\)](#)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.
- [NYC Business](#) - [nyc.gov/nycbusiness](https://nyc.gov/nycbusiness) - 개방 지침, 무료 마스크 배부, 자금 지원에 대한 링크



- [NYC 311 – https://portal.311.nyc.gov](https://portal.311.nyc.gov) – [코로나바이러스\(COVID-19\) 및 시민 생활\(Coronavirus \(COVID-19\) and City Life\)](#)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.
- [NY Forward – forward.ny.gov](http://forward.ny.gov) – NY 주 웹사이트, 법률 지침
- [뉴욕시 빌딩 부서\(NYC Department of Buildings, DOB\) – nyc.gov/buildings](http://nyc.gov/buildings) – 건설 부문에 관한 정보